

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1. 1. 26.(수) 15:3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
양문석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-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등 8개 법인 - (2011-05-012)

○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의거, 8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- 허가적격 판정을 받은 6개 허가신청 법인[한국마이크로소프트(유), 스카이혹 와이어리스 아이엔씨, (주)에스원, (주)아인텔, (주)엔알피시스템, 아리온통신(주)]에 대하여 위치정보사업을 신규허가함

2)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(안) 등에 관한 건 - (2011-05-013)

○ 김준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위해 마련된 「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」 등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세부심사기준(안) 주요 내용

① 기본 방향

① **(합법·합리적이고 공정·공명한 심사 진행)**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하여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, 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결정

※ 심사기준은 '심사사항(대분류) → 심사항목(중분류) → 세부심사항목(소분류) → 평가방법(평가요소, 평가지표, 세부평가방법)'으로 구성

② **(정책목표를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)** 정책방안에서 정한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심사항목의 배점, 세부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, 평가방법을 마련

②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·배점

① 방송의 공적 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가능성 (35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배점
1-1. 공적 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계획(40)	1-1-1.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	20
	1-1-2. 방송의 공정성·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	20
1-2. 지역·사회·문화적 기여도(30)	1-2-1.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	10
	1-2-2.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	10
	1-2-3.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	10
1-3. 신청법인의 적정성(100)	1-3-1. 주주구성의 적정성	70
	1-3-2. 주주구성의 건전성	30
1-4. 시청자·소비자 권익 실현 방안(90)	1-4-1. 소비자 보호계획의 우수성	60
	1-4-2.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	30
1-5.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계획(90)	1-5-1. 사업자간 공정경쟁 방안	45
	1-5-2. 생산자 육성계획의 적정성	45

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(20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배점
2-1. 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·제작계획(80)	2-1-1. 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계획의 우수성	50
	2-1-2.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우수성	30
2-2.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(90)	2-2-1. 상품 구성 계획의 우수성	60
	2-2-2. 상품 확보 계획의 우수성	30
2-3. 채널 확보계획(30)	2-3-1. 채널 확보계획의 적정성	15
	2-3-2. 채널 확보계획의 합리성	15

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(25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배점
3-1. 사업추진계획(40)	3-1-1.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	20
	3-1-2. 마케팅 및 물류 계획의 우수성	20
3-2.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(40)	3-2-1.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	20
	3-2-2.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	20
3-3. 납입자본금 규모(60)	3-3-1.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(계량)	60
3-4.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(40)	3-4-1.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	20
	3-4-2.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	20
3-5. 사업성 분석(20)	3-5-1. 추정 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	20
3-6. 경영의 투명성·효율성(50)	3-6-1.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	30
	3-6-2.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	20

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(10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배점
4-1. 재정적 능력(45)	4-1-1. 자기자본 순이익률(계량)	15
	4-1-2. 부채비율(계량)	15
	4-1-3. 총자산 증가율(계량)	15
4-2. 자금출자 능력(30)	4-2-1.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 對 출자금액의 적정성(계량)	10
	4-2-2. 자기자본 對 출자금액의 적정성(계량)	10
	4-2-3. 주요주주의 신용등급(계량)	10
4-3. 기술적 능력(25)	4-3-1. 방송시설 설치·운영계획	15
	4-3-2. 방송기술 및 기타 시설확보 및 활용계획	10

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(10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배점
5-1. 방송·콘텐츠 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(40)	5-1-1. 방송·콘텐츠 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	40
5-2. 유통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(40)	5-2-1. 유통산업 발전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	40
5-3. 출연금(20)	5-3-1.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(계량)	20

③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

① 정책목표를 고려, 심사항목을 3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 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선정

- '신청법인의 적정성', '상품 구성 및 확보 계획', '납입 자본금 규모'는 정책방안에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기 확정

② 신청법인의 적정성, 시청자·소비자 권익실현 방안(이상 공익성 및 공적 책임 관련),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계획,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(이상 중소기업 지원 관련), 납입 자본금 규모, 경영의 투명성·효율성(이상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관련) 등 6개 심사항목을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선정

④ 평가방법 관련 주요사항

① (주요주주의 범위) 구성주주 중 주된 평가 대상이 되고,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지분 5% 이상 보유 주주 및 지분 1%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%까지인 주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

- ② **(신청법인의 적정성 평가방안)**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'신청법인의 적정성'(심사항목)에 대한 평가방안을 제시
- **(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 평가방안)**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거나 공공적 성격의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중심 주주(이하 "우대주주")로 평가
 - ① 기존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, ② 우대주주 비율이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% 미만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
 - ※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,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등 특별결의 요건 규정(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) 등을 고려하여 70% 이상으로 설정
 - 최대주주가 우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, '신청법인의 적정성'(심사항목) 중 '주주구성의 적정성'(세부심사항목)에 대해 30점을 부여
 - ※ 대기업 참여(1인지분 포함)에 대해서도 '주주구성의 적정성'에서 평가
- ③ **(기존 홈쇼핑 PP 참여 배제방안)**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도입취지와 방송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존 홈쇼핑 PP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
- **(심사 시 평가방안)** 신청법인에 기존 홈쇼핑 PP(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)가 지분 참여한 경우, 해당 홈쇼핑 PP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
 - 해당 홈쇼핑 PP의 출자예정금액은 신청법인의 자본금으로 인정하되, '주주구성의 건전성'(세부심사항목)에서 불이익을 부여
 - 주요주주로 참여한 경우 '재정적 능력' 및 '자금출자능력'(심사항목)의 세부심사항목에서 신청법인의 주요주주 평가 시 최저점수를 부여
 - **(승인 의결 후 처리방안)** 기존 홈쇼핑 PP가 참여한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, 홈쇼핑 PP를 대체한 주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, 해당 주주가 주금납입을 완료한 후 승인장을 교부
- ④ **(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 유지방안)**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주주구성 변경 금지 등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
- **(주주구성 변경 금지방안)** 승인 신청 후 승인 의결 전까지 주주구성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
 - 승인장 교부 시, 주요주주 구성(지분을 포함)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와 우대주주의 지분이 70%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하며,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용 여부 결정

·승인장 교부 후,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

·승인장 교부 후, 우대주주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% 이상으로 유지

- **(대기업으로 소유권 이전 방지 보완)** 구성주주의 지분 처분 시 이사회 의사결정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 여부 등 신청법인의 대기업으로의 소유권 이전 방지방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에 반영

⑤ **(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)** 심사항목인 ‘자금조달 및 운영계획’ 중 ‘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’(세부심사항목)에서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

- **(실행가능성 평가방법)** 모든 구성주주의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(주요 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추가),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비계량으로 평가

※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서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 납입 실현가능성의 지속력을 평가

- **(건전성 평가방법)**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비계량으로 평가

※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방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위·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

⑥ **(주요주주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평가방안)** 법인격이 없는 조합 또는 펀드 등의 경우 심사 시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평가하고,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판단 시에도 출자자를 구성주주로 간주

-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의 경우 단체성이 강하므로 단체 자체를 평가

○ 승인신청요령(안) 주요 내용

①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

② 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○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. 1. 31(월)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 (15:50)